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손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49
----------	-------

발의연월일 : 2025. 11. 21.

발 의 자 : 손 솔 · 정혜경 · 김재원
용혜인 · 박홍근 · 이주희
윤종오 · 전종덕 · 최혁진
김종민 · 한정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농촌지역의 개발 및 축산발전의 촉진이라는 목적 아래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소싸움 경기를 허용하고,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 및 적중 환급금 지급, 소싸움경기장 설치, 싸움소 등록과 심판 면허,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정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달리 오늘날의 사회적 가치관 변화와 동물복지 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에 비추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동물을 단순한 오락의 도구로 이용하는데 대한 국민 일반 정서와의 괴리 문제와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상해와 고통을 유발하는 동물학대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서도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동물 오락 행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사행행위를 금지하고

싸움소 또한 「동물복지법」을 적용받도록 하여 동물 보호와 복지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과 관련된 처분·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후단을 삭제한다.

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호바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체육진흥투표권 및 소싸움경기의”를 “체육진흥투표

권의”로 한다.

③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0호 사목 중 “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을 “승자투표권”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을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을 “승자투표권”으로 한다.

제8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을 “승자투표권”으로 한다.

제119조제12호바목 중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을 “승자투표권”으로 한다.

제156조제8항 중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을 “승자투표권”으로 한다.

⑤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